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411351		
등록번호	110111-4113512		
상 호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 (FourThirtyThree Inc.)		
본 점	<del>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19 리버타워오피스텔 1-202</del>		
	<del>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5-1 영호빌딩 3층</del>	2009.12.09 변경 2009.12.10 등기	
	<del>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4, 3층(서초동, 영호빌딩)</del>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01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4길 22(삼성동)	2013.11.02 변경 2013.11.04 등기	
공고방법	<del>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del>		
	<del>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ur33.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del>	2013.05.03 변경 2013.05.10 등기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433.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14.12.01 변경 2014.12.02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del>4,000,000 주</del>		
	10,000,000 주	2014.12.01 변경 2014.12.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del>1,000,000 주</del>		
<del>보통주식</del>	<del>1,000,000 주</del>	<del>금 500,0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515,132 주		2009.10.16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515,132 주</del>	<del>금 757,566,000 원</del>	2009.10.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871,639 주		2011.02.2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871,639 주</del>	<del>금 935,819,500 원</del>	2011.02.24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1일 15시28분07초

- 1/27 -

등기번호	41135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183,585 주 <del>보통주식 1,871,639 주</del> <del>우선주식 311,946 주</del>	<del>금 1,091,792,500 원</del>	2013.05.28 변경 2013.05.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183,585 주 <del>기타 1,871,63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311,946 주</del>	<del>금 1,091,792,500 원</del>	2014.11.21 상업 등기규칙 부칙 제 2조에 따른 이기 2014.12.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215,825 주 <del>기타 1,871,63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44,186 주</del>	<del>금 1,091,792,500 원</del>	<del>2014.12.02 변경</del> <del>2014.12.02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3,215,825 주 <del>보통주식 1,871,63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44,186 주</del>	<del>금 1,607,912,500 원</del>	2014.12.02 변경 2014.12.17 등기 2014.12.02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3,215,825 주 <del>보통주식 1,906,63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09,186 주</del>	<del>금 1,607,912,500 원</del>	<del>2014.12.11 경정</del> <del>2014.12.17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3,215,825 주 <del>보통주식 1,906,63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09,186 주</del>	<del>금 1,607,912,500 원</del>	2014.12.11 변경 2014.12.18 등기 2014.12.18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3,224,345 주 <del>보통주식 1,915,159 주</del> <del>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09,186 주</del>	<del>금 1,612,172,500 원</del>	2016.06.30 변경 2016.07.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224,445 주 보통주식 1,915,259 주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 전환주식 1,309,186 주	금 1,612,222,500 원	2017.04.25 변경 2017.04.28 등기

목	적
<del>1. 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 판매, 유통업</del> 1. 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 판매, 유통업, 서비스업	<2014.03.28 변경 2014.04.04 등기>
1. 온라인정보제공업 1. 인터넷컨텐츠, 뉴미디어 사업 <del>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del> 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2014.03.28 변경 2014.04.04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1일 15시28분07초

- 2/27 -

등기번호	411351
------	--------

1. 출판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캐릭터상품 제조 및 판매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전자상거래 및 통신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광고홍보 및 광고대행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부가통신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수출입업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4.03.28	추가	2014.04.0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del>사내이사 권준모 641226-*****</del>	2012년 03월 31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양귀성 730129-*****</del>	2012년 03월 31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소태환 780129-*****</del>	2012년 03월 31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del>감사 장원상 750512-*****</del>	2012년 03월 31일 중임 2013년 10월 01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3년 10월 11일 등기		
<del>대표이사 권준모 6412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30 방배3차 이편한세상 102-1102</del> <del>대표이사 권준모 6412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9-5, 102동 1102호(방배동, 방배3차 이편한세상)</del>	2011년 10월 31일 도로명주소 2012년 03월 31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2년 05월 10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이경호 670827-*****</del>	2009년 12월 09일 취임 2012년 03월 31일 사임	2009년 12월 10일 등기 2012년 05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권준모 641226-*****</del>	2012년 03월 31일 취임 2015년 03월 30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사내이사 양귀성 730129-*****</del>	2012년 03월 31일 취임 2015년 03월 30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사내이사 소태환 780129-*****</del>	2012년 03월 31일 취임 2015년 03월 30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이경호 670827-*****</del>	2012년 03월 31일 취임 2013년 03월 08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3년 03월 14일 등기		
<del>대표이사 권준모 6412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9-5, 102동 1102호(방배동, 방배3차 이편한세상)</del>	2012년 03월 31일 취임 2012년 10월 05일 사임	2012년 05월 10일 등기 2012년 10월 09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1일 15시28분07초

등기번호	411351
------	--------

<del>대표이사 양귀성 730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19, 502호(역삼동)</del>	2012년 10월 05일 취임	2012년 10월 09일 등기
<del>대표이사 양귀성 730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2길 6-7, 502호(반포동, 유로하우스)</del>	2013년 07월 15일 주소변경	2013년 07월 18일 등기
	2015년 03월 30일 사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대표이사 소태환 78012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3길 8, 101동 603호(한강로2가, 한강로백산메가트리움)</del>	2012년 10월 05일 취임	2012년 10월 09일 등기
<del>대표이사 소태환 780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40, 101동 2303호(대흥동, 마포자이 2차아파트)</del>	2014년 08월 04일 주소변경	2014년 08월 11일 등기
	2015년 03월 30일 사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신형일 670325-*****</del>	2013년 03월 08일 취임	2013년 03월 14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사임	2014년 11월 25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정경인 800811-*****</del>	2013년 06월 20일 취임	2013년 07월 02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사임	2016년 04월 08일 등기
<del>감사 남궁훈 721019-*****</del>	2013년 10월 01일 취임	2013년 10월 11일 등기
	2015년 08월 27일 사임	2015년 09월 03일 등기
<del>사내이사 장원상 750512-*****</del>	2014년 03월 28일 취임	2014년 04월 04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사임	2014년 11월 25일 등기
<del>사내이사 박재석 650821-*****</del>	2014년 11월 21일 취임	2014년 11월 25일 등기
	2015년 05월 26일 사임	2015년 06월 02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미합중국인 김준성(KIM GENE JOONSUNG) 1968년 11월 10일생</del>	2014년 11월 21일 취임	2014년 11월 25일 등기
	2016년 04월 18일 사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이창규 830902-*****</del>	2014년 11월 21일 취임	2014년 11월 25일 등기
	2017년 03월 30일 사임	2017년 03월 31일 등기
사내이사 권준모 641226-*****	2015년 03월 30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del>사내이사 소태환 780129-*****</del>	2015년 03월 30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퇴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사내이사 장원상 750512-*****	2015년 03월 30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1일 15시28분07초

등기번호	411351
------	--------

<del>공동대표이사 소태환 7801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40, 101동 2303호(대흥동, 마포차이2차아파트)</del>	
2015년 03월 30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6년 04월 18일 사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장원상 7505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8, 204동 401호(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del>	
2015년 03월 30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장원상 7505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56, 301동 104호(삼성동, 래미안삼성1차아파트)</del>	
2015년 09월 11일 주소변경	2015년 09월 17일 등기
<del>대표이사 장원상 7505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56, 301동 104호(삼성동, 래미안삼성1차아파트)</del>	
2017년 10월 16일 공동대표 규정폐지	2017년 10월 20일 등기
2018년 02월 01일 사임	2018년 02월 05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상용 720824 *****</del>	
2015년 08월 27일 취임	2015년 09월 03일 등기
2016년 04월 18일 사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del>감사 허용 591008 *****</del>	
2015년 08월 27일 취임	2015년 09월 03일 등기
2018년 03월 27일 퇴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정경인 800811 *****</del>	
2016년 03월 31일 취임	2016년 04월 08일 등기
2017년 01월 10일 사임	2017년 01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박영호 780609 *****</del>	
2016년 04월 18일 취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2018년 02월 01일 사임	2018년 02월 05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신형일 670325 *****</del>	
2016년 04월 18일 취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2019년 03월 28일 사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박영호 7806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5동 2703호(잠실동, 레이크팰리스)</del>	
2016년 04월 18일 취임	2016년 04월 26일 등기
2017년 10월 16일 사임	2017년 10월 20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한상우 710322 *****</del>	
2017년 03월 30일 취임	2017년 03월 31일 등기
2019년 03월 06일 사임	2019년 03월 06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박재현 720718 *****</del>	
2017년 03월 30일 취임	2017년 03월 31일 등기
2017년 10월 16일 사임	2017년 10월 20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구경모 810618 *****</del>	
2017년 10월 16일 취임	2017년 10월 20일 등기
2019년 03월 06일 사임	2019년 03월 06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1일 15시28분07초

등기번호	411351
사내이사 한성진 721217-***** 2018년 02월 01일 취임      2018년 02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한성진 7212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93, 306동 1302호(보라동, 한보라마을화성파크드림) 2018년 02월 01일 취임      2018년 02월 05일 등기	
사내이사 양귀성 730129-*****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감사 권혁우 710120-***** 2018년 03월 27일 취임      2018년 03월 30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형 880119-***** 2019년 03월 06일 취임      2019년 03월 06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남수균 851115-***** 2019년 03월 06일 취임      2019년 03월 06일 등기 2019년 07월 31일 사임      2019년 08월 05일 등기</del>	
기타비상무이사 신형일 670325-*****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대만국인 장진산(CHANG CHEN SHAN) 1986년 7월 5일생 2019년 07월 31일 취임      2019년 08월 05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량~~

~~2013년 05월 28일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311,946주~~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의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의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일 등기~~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량~~

~~2013년 05월 28일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311,946주~~

~~1. 의결권~~

- ~~① 우선주식 1주(이하 “우선주” 라 한다.)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 주주들(이하 “우선주 주주들” 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주주총회가 우선주의 권한, 우선권, 권리 또는 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의 별도로,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하 “본건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유효하다. 본건 기간 동안 보~~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11351

~~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우선주는 본건 기간 만료일 익일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량~~

~~2013년 05월 28일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276,946주~~

~~1. 의결권~~

~~① 우선주식 1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 주주들(이하 “우선주 주주들”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주총회가 우선주의 권한, 우선권, 권리 또는 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와 별도로,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하 “본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 유효하다. 본건 기간 동안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우선주는 본건 기간 만료일 익일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2014년 12월 11일 변경 2014년 12월 17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항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

~~일 등기~~

~~2. 배당권~~

~~① 우선주는 참가적이며 누적적인 우선 주식이다. 보통주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전, 우선주 주주들에게 연간 우선주 액면가의 최소 0.1%(이하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이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에 적용되는 배당률과 동일한 배당률로 추가 배당을 받는다.~~

~~② 주식 배당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회사 총 기발행 주식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등기번호

411351

각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우선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단, 주식 배당에 의해 우선주 주주들이 권리를 갖는 단주의 경우, 회사는 해당 단주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③ 배당금을 산정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우선주 주주들은 해당 우선주가 발행된 회계연도의 직전 회사 회계연도의 말일에 해당 우선주의 등기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주주총회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주 주주들에게 우선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우선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회사가 본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 주주들에게 해당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배당금이 지급된 날까지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이 결정된 때에는 미지급된 배당금은 전부 해당 주주에게 지급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일 등기~~

3. 우선청산대금 수령권(Liquidation Preference Rights)

① 회사 청산시 회사 자산(이하 "본건 자산"이라 한다)을 보통주 주주들에 분배하기 전에 그리고 그에 우선하여, 우선주 주주들은 (i) 우선주 주주들이 당시 보유했던 각 우선주에 대하여 매 1주당 발행가 100%와 (ii) 우선주에 대하여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배당금 총액(이하 "우선주 우선청산대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선청산대금(liquidation preference)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우선주 주주들에게 우선주 우선청산대금을 전액 지급 후, 잔존 본건 자산은 우선주 주주들 및 보통주 주주들에게 안분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11351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일 등기

4. 전환권

각각의 우선주 주주들 및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전환권을 가진다:

1. 전환기간:

우선주 주주들은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주 발행일 직후일(이하 “본건 발행일”이라 한다.)과 본건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본건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건 기간 동안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우선주는 본건 기간의 만료일 직후 일자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회사는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2. 전환방법:

- 1.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수와 유형 및 전환일자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서에 서명하여 전환될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그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우선주 주주들에게 (i) 전환될 우선주의 수와 종류, (ii)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주 주주들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 및 (iii) 해당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인 또는 일부가 아닌 우선주 주주들 전원에 대하여 우선주 전부의 전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주 주주가 전환 예정 우선주를 나타내는 주권을 교부하는 일자의 영업 종료 직전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우선주 전환시 보통주를 수령하는 우선주 주주는 위 2목에 명시된 일자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상 해당 보통주의 등기 주주로 간주된다.
- 4. 전환될 우선주의 주권을 수령 후 가능한 신속히, 회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에게 본 조건 규정에 따른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11351

~~회계년도 : 2013~~

~~매출액 : 200억원 미만~~

~~조정 후 전환가격 : 22,120원~~

~~3. 회사가 IPO시 산정된 공모가액 (이하 "IPO 공모가액") 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이하 "이해관계인 제3자 매각 시 매각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가액(또는 이해관계인 제3자 매각 시 매각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의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일 등기~~

~~3. 전환비율:~~

~~1. 우선주 1주는 원칙적으로 보통주1주로 전환된다.~~

~~2. (a) 회사의 기업공개에 따른 주당 공모가격(이하 "기업공개가격" 라 한다.) 또는 (b) 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특정인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주당 가격 (이하 "특정인 주식매도가" 라 한다.) 이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격 미만인 경우, 해당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각 우선주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 = (조정 전 각 우선주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 x (조정 전 주당 전환가) / (기업공개가격 또는 경우에 따라 특정인 주식매도가)~~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대 보통주 전환비율이 회사의 기업공개시 기업공개가격이 당시 유효한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3주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최대 전환비율인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3주의 비율로 하향 조정된다.~~

~~3. 회사가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중간연계증권을 포함하되~~

등기번호

411351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신주 또는 지분증권(이하 “본건 신주”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당 발행가, 전환가 또는 행사가가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 미만인 때에는, 우선주에 대한 주당 전환가는 본건 신주의 주당 발행가, 전환가 또는 행사가와 동일해지도록 하향 조정된다.

4. 우선주 발행 후 언제라도 회사 총 기발행 주식수가 주식 배당 또는 유상증자의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아래 공식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우선주와 동일한 유형 및 등급의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우선주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규 발행되는 우선주의 수

$B_i$ : 해당 신주의 발행 전 우선주 주주가 보유한 우선주의 수

$B_c$ : 해당 신주 발행 전 회사의 총 기발행 주식수(우선주 및 보통주 포함)

$A_c$ : 해당 신주 발행 후 회사의 총 기발행 주식수(우선주 및 보통주 포함)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하도록 교환비율을 조정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

일 등기

5. 합병시 합병 비율 산정의 목적으로 사용된 주당 주식 평가금액이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 미만인 경우, 우선주에 대한 주당 전환가는 위 주당 주식 평가금액과 동일해지도록 하향 조정된다.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경우, 우선주의 주당 전환가격은 해당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해당 사유 발생 직후 우선주의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7. 자본감소의 경우, 우선주의 주당 전환가는 자본감소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4. 주식의 보존:

회사는, 우선주의 전환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모든 기발행 우선주의 전환을 수시로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적법한 수권 미발행 보통주를 보존, 유지한다.

5. 기타:

한국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 통지 등 회사의 주식 전환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적용된다. 우선주 주주들 또는 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 및 해당 전환시 발행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산정 및 분배와 관련하여, 해당 우선주는 전환권이 행사된 회계연도 직전 연도 말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로부터 3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

일 등기

5. 상환권

1. 상환권:

우선주 주주들은 본건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우선주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일자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적법하게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전액을 해당 우선주의 상환에 충당한다. 회사가 상환일에 상환대상 우선주 전부를 적법하게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당시 상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선주를 상환하고, 합법적 상환이 가능해지는 즉시 잔여 우선주를 상환한다. 단, 회사가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불문하고 해당 자금을 상환되지 않았던 우선주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상환기간은 상환 완료시까지 연장된다. 우선주 주주의 본 조건에 따른 상환권 행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의 상환 청구 일자 현재 상환된 우선주에 대하여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을 수령



등기번호

411351

할 우선주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상환 조건:

본건 기간 종료 전 언제라도 우선주 주주에 의한 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배당 및 상환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우선주를 상환한다.

3. 상환 방법:

회사는 우선주의 상환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주를 현금으로 상환한다. 회사는 현금 이외의 증권 또는 어떤 자산으로 우선주를 상환하지 않는다.

4. 상환가액:

회사는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격과 동일한 상환가액에 우선주를 상환한다.

5. 연체이자:

우선주 주주에 의한 상환 청구 및 충분한 분배가능/배당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우선주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에게 해당 상환대상 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명시된 상환일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가액의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율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⑦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4년 12월 02일 등기

6. 상환의 기한의 이익 상실:

위 제2항에 명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주주들은 다음 사유 발생시 회사로 하여금 제3항 내지 5항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종결 후 회사가 인수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인수대금의 지급을 거짓으로 인식하거나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중요 자산을 달리 이용하



등기번호	411351
------	--------

- 거나 채무변제에 사용(discharge)하는 경우;
- 회사가 한국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과 회사가 거래관련서류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회사의 감사 보고서 관련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부정적, 또는 거절의 감사 의견을 수령하는 경우;
  -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 회사 또는 우선주인수계약서상 특정인이 거래관련서류에 명시된 약속사항 및/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래관련서류에 명시된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은 제외함).
  - 회사는 우선주 관련하여 어떤 상환권도 보유하지 않는다.

6.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 또는 신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과 동순위로 안분비율에 따라 해당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한다. 신주 또는 신규 증권의 무상증자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안분비율에 따라 우선주와 동일한 유형 및 클래스의 우선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상증자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안분비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유형 및 클래스의 주식을 인수할 권한을 가진다.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량

2014년 12월 02일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1,032,240주

1. 의결권

- 우선주식 1주(이하 “우선주” 라 한다.)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 주주들(이하 “우선주 주주들” 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주주총회가 우선주의 권한, 우선권, 권리 또는 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와 별도로,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하 “본건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유효하다. 본건 기간 동안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우선주는 본건 기간 만료일 익일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2. 배당권

- 우선주는 참가적이며 누적적인 우선 주식이다. 보통주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전, 우선주 주주들에게 연간 우선주 액면가의 최소 0.1%(이하 “우선배당률”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우선배당금” 이라 한다.)이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에 적용되는 배당률과 동일한 배당률로 추가 배당을 받는다.
- 주식 배당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회사 총 기발행 주식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각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우선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단, 주식 배당에 의해 우선주 주주들이 권리를 갖는 단주의 경우, 회사는 해당 단주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 배당금을 산정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우선주 주주들은 해당 우선주가 발행된 회계연도의

등기번호	411351
------	--------

직전 회사 회계연도의 말일에 해당 우선주의 등기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주주총회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주 주주들에게 우선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우선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회사가 본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 주주들에게 해당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배당금이 지급된 날까지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이 결정된 때에는 미지급된 배당금은 전부 해당 주주에게 지급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3. 우선청산대금 수령권(Liquidation Preference Rights)

① 회사 청산시 회사 자산(이하 “본건 자산”이라 한다)을 보통주 주주들에 분배하기 전에 그리고 그에 우선하여, 우선주 주주들은 (i) 우선주 주주들이 당시 보유했던 각 우선주에 대하여 매 1주당 발행가 100%와 (ii) 우선주에 대하여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배당금 총액(이하 “우선주 우선청산대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선청산대금(liquidation preference)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우선주 주주들에게 우선주 우선청산대금을 전액 지급 후, 잔존 본건 자산은 우선주 주주들 및 보통주 주주들에게 안분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4. 전환권

각각의 우선주 주주들 및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전환권을 가진다:

1. 전환기간:

우선주 주주들은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주 발행일 직후일(이하 “본건 발행일”이라 한다.)과 본건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본건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건 기간 동안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우선주는 본건 기간의 만료일 직후 일자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회사는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2. 전환방법:

1.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수와 유형 및 전환일자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서에 서명하여 전환될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그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우선주 주주들에게 (i) 전환될 우선주의 수와 종류, (ii)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주 주주들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 및 (iii) 해당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인 또는 일부가 아닌 우선주 주주들 전원에 대하여 우선주 전부의 전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주 주주가 전환 예정 우선주를 나타내는 주권을 교부하는 일자의 영업 종료 직전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우선주 전환시 보통주를 수령하는 우선주 주주는 위 2목에 명시된 일자 현재 회사의 주주

등기번호	411351
------	--------

명부상 해당 보통주의 등기 주주로 간주된다.

4. 전환될 우선주의 주권을 수령 후 가능한 신속히, 회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에게 본 조건 규정에 따른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3. 전환비율:

1. 우선주 1주는 원칙적으로 보통주1주로 전환된다.

2. (a) 회사의 기업공개에 따른 주당 공모가격(이하 “기업공개가격”라 한다.) 또는 (b) 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특정인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주당 가격(이하 “특정인 주식매도가”라 한다.) 이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격 미만인 경우, 해당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각 우선주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 = (조정 전 각 우선주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 수) x (조정 전 주당 전환가) / (기업공개가격 또는 경우에 따라 특정인 주식매도가)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대 보통주 전환비율이 회사의 기업공개시 기업공개가격이 당시 유효한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3주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최대 전환비율인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3주의 비율로 하향 조정된다.

3. 회사가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주간연계증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신주 또는 지분증권(이하 “본건 신주”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당 발행가, 전환가 또는 행사가가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 미만인 때에는, 우선주에 대한 주당 전환가는 본건 신주의 주당 발행가, 전환가 또는 행사가와 동일해지도록 하향 조정된다.

4. 우선주 발행 후 언제라도 회사 총 기발행 주식수가 주식 배당 또는 유상증자의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아래 공식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우선주와 동일한 유형 및 등급의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우선주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규 발행되는 우선주의 수

$B_i$ : 해당 신주의 발행 전 우선주 주주가 보유한 우선주의 수

$B_c$ : 해당 신주 발행 전 회사의 총 기발행 주식수(우선주 및 보통주 포함)

$A_c$ : 해당 신주 발행 후 회사의 총 기발행 주식수(우선주 및 보통주 포함)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5. 합병시 합병 비율 산정의 목적으로 사용된 주당 주식 평가금액이 우선주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 미만인 경우, 우선주에 대한 주당 전환가는 위 주당 주식 평가금액과 동일해지도록 하향 조정된다.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경우, 우선주의 주당 전환가격은 해당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해당 사유 발생 직후 우선주의 당시 유효한 주당 전환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7. 자본감소의 경우, 우선주의 주당 전환가는 자본감소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4. 주식의 보존:

등기번호	411351
------	--------

회사는, 우선주의 전환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모든 기발행 우선주의 전환을 수시로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적법한 수권 미발행 보통주를 보존, 유지한다.

5. 기타:

한국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 통지 등 회사의 주식 전환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적용된다. 우선주 주주들 또는 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 및 해당 전환시 발행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산정 및 분배와 관련하여, 해당 우선주는 전환권이 행사된 회계연도 직전 연도 말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5. 상환권

1. 상환권:

우선주 주주들은 본건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우선주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일자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적법하게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전액을 해당 우선주의 상환에 충당한다. 회사가 상환일에 상환대상 우선주 전부를 적법하게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당시 상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선주를 상환하고, 합법적 상환이 가능해지는 즉시 잔여 우선주를 상환한다. 단, 회사가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불문하고 해당 자금을 상환되지 않았던 우선주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상환기간은 상환 완료시까지 연장된다. 우선주 주주의 본 조건에 따른 상환권 행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의 상환 청구 일자 현재 상환된 우선주에 대하여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할 우선주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상환 조건:

본건 기간 종료 전 언제라도 우선주 주주에 의한 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배당 및 상환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우선주를 상환한다.

3. 상환 방법:

회사는 우선주의 상환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주를 현금으로 상환한다. 회사는 현금 이외의 증권 또는 어떤 자산으로 우선주를 상환하지 않는다.

4. 상환가격:

회사는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격과 동일한 상환가격에 우선주를 상환한다.

5. 연체이자:

우선주 주주에 의한 상환 청구 및 충분한 분배가능/배당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우선주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우선주 주주에게 해당 상환대상 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명시된 상환일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가액의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율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의결권있는배당우선상환전환주식

6. 상환의 기한의 이익 상실:

위 제2항에 명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주주들은 다음 사유 발생시 회사로 하여금 제3항 내지 5항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기번호	411351
------	--------

1. 거래종결 후 회사가 인수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인수대금의 지급을 거짓으로 인식하거나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중요 자산을 달리 이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discharge)하는 경우;
  2. 회사가 한국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과 회사가 거래관련서류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가 회사의 감사 보고서 관련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또는 거절의 감사 의견을 수령하는 경우;
  4.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5. 회사 또는 우선주인수계약서상 특징인이 거래관련서류에 명시된 약속사항 및/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래관련서류에 명시된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은 제외함).
  7. 회사는 우선주 관련하여 어떤 상환권도 보유하지 않는다.
6.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 또는 신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과 동순위로 안분비율에 따라 해당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한다. 신주 또는 신규 증권의 무상증자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안분비율에 따라 우선주와 동일한 유형 및 클래스의 우선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상증자의 경우, 우선주 주주들은 안분비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유형 및 클래스의 주식을 인수할 권한을 가진다.
- 2014년 12월 02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3년 05월 03일 말소      2013년 05월 10일 등기~~

~~1. 상환주식~~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량~~

~~상환전환우선주식 311,946주~~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항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등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3년 05월 28일 변경      2013년 05월 29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4년 12월 02

일 등기

1. ~~전환주식~~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등기번호

411351

~~2. 회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회계년도 : 2013~~

~~매출액 : 200억원 미만~~

~~조정 후 전환가격 : 22,120원~~

~~3. 회사가 IPO시 산정된 공모가액(이하 “IPO 공모가액”) 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이하 “이해관계인 제3자 매각 시 매각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가액(또는 이해관계인 제3자 매각 시 매각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

등기번호

411351

~~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3년 05월 28일 변경 2013년 05월 29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4년 12월 02~~

~~일 등기~~

~~1. 상환주식~~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로부터 3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마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⑦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기번호	411351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3년 05월 28일 변경 2013년 05월 29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4년 12월 02일 등기~~

**전 환 사 채**

(주) ~~네시삼십삼분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16년 04월 15일 발행 2016년 04월 20일 등기 >~~  
~~< 2019년 04월 14일 기간만료 2019년 04월 19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2,545,950,000원~~  
~~< 2016년 04월 15일 발행 2016년 04월 20일 등기 >~~  
~~금 2,470,950,000원~~  
~~< 2016년 07월 04일 일부상환 2016년 07월 07일 등기 >~~  
~~금 2,425,950,000원~~  
~~< 2016년 07월 31일 일부상환 2016년 08월 02일 등기 >~~  
~~금 2,335,950,000원~~  
~~< 2016년 08월 24일 일부상환 2016년 08월 30일 등기 >~~  
~~금 2,290,950,000원~~  
~~< 2016년 09월 30일 일부상환 2016년 10월 04일 등기 >~~  
~~금 2,230,950,000원~~  
~~< 2016년 11월 01일 일부상환 2016년 11월 03일 등기 >~~  
~~금 2,113,950,000원~~  
~~< 2016년 11월 30일 일부상환 2016년 12월 09일 등기 >~~  
~~금 1,963,950,000원~~  
~~< 2016년 12월 02일 일부상환 2016년 12월 09일 등기 >~~  
~~금 1,854,450,000원~~  
~~< 2016년 12월 27일 일부상환 2017년 01월 10일 등기 >~~  
~~금 1,779,450,000원~~  
~~< 2017년 01월 26일 일부상환 2017년 02월 02일 등기 >~~  
~~금 1,705,500,000원~~  
~~< 2017년 02월 28일 일부상환 2017년 03월 03일 등기 >~~  
~~금 1,615,500,000원~~  
~~< 2017년 03월 31일 일부상환 2017년 03월 31일 등기 >~~  
~~금 1,480,500,000원~~  
~~< 2017년 04월 28일 일부상환 2017년 04월 28일 등기 >~~  
~~금 1,335,000,000원~~  
~~< 2017년 05월 31일 일부상환 2017년 05월 31일 등기 >~~  
~~금 1,170,000,000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11351
------	--------

< 2017 년 06 월 28 일 일부상환 <del>금 1,125,000,000원</del>	2017 년 06 월 29 일 등기 >
< 2017 년 07 월 31 일 일부상환 <del>금 1,080,000,000원</del>	2017 년 08 월 02 일 등기 >
< 2017 년 08 월 31 일 일부상환 <del>금 960,000,000원</del>	2017 년 09 월 06 일 등기 >
< 2017 년 09 월 22 일 일부상환 <del>금 555,000,000원</del>	2017 년 09 월 27 일 등기 >
< 2017 년 10 월 30 일 일부상환 <del>금 510,000,000원</del>	2017 년 11 월 13 일 등기 >
< 2017 년 11 월 28 일 일부상환 <del>금 435,000,000원</del>	2017 년 12 월 12 일 등기 >
< 2018 년 03 월 29 일 일부상환 <del>금 360,000,000원</del>	2018 년 04 월 03 일 등기 >
< 2018 년 04 월 11 일 일부상환 <del>금 285,000,000원</del>	2018 년 04 월 19 일 등기 >
< 2018 년 06 월 08 일 일부상환 <del>금 135,000,000원</del>	2018 년 06 월 22 일 등기 >
< 2018 년 10 월 29 일 일부상환 <del>금 75,000,000원</del>	2018 년 10 월 29 일 등기 >
< 2019 년 02 월 28 일 일부상환	2019 년 03 월 06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19,950천원권, 30,000천원권, 37,500천원권, 45,000천원권 1, 60,000천원권, 70,500천원권, 72,000천원권, 75,000천원권, 90,000천원권, 99,000천원권~~

< 2016 년 04 월 15 일 발행 2016 년 04 월 20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6 년 04 월 15 일 발행 2016 년 04 월 20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100%~~

~~2. 전환가액: 조정 전 최초 전환가격은 주당 일십오만(150,000)원으로 한다.~~

~~3. 전환주식 수: 본건 사채 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 다만 1주 미만의 단주는 당해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 시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4. 전환가액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가.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11351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A+B)~~

~~A: 신주 발행일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B: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나. 합병, 분할,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마.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하는 것은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2016 년 04 월 15 일 발행 2016 년 04 월 20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2016 년 04 월 15 일 발행 2016 년 04 월 20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건 사채 발행일에서 2년이 지난 날(2018년 04월 15일)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2019년 04월 14일)까지~~

~~< 2016 년 04 월 15 일 발행 2016 년 04 월 20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14 일 기간만료 2019 년 04 월 19 일 등기 >~~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부여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법률(벤처기업법)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 2014 년 12 월 01 일 변경 2014 년 12 월 02 일 등기 >

등기번호

411351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1)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3.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제1호 가목의 실질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
- <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1)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3.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제1호 가목의 실질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
- < 2016년 03월 31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등기번호

41135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3년 05월 03일 변경 2013년 05월 10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상법 및 벤처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013년 05월 03일 변경 2013년 05월 10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기번호	411351
------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4년 12월 01일 변경 2014년 12월 02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9년 06월 11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9년 06월 11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열 램 용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